

#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84,771,244	38,543,137
일반회계	1,156,579,240	34,697,377
특별회계	128,192,004	3,845,760
공기업특별회계	122,788,719	3,683,66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791,183	833,73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4,997,536	2,849,926
기타특별회계	5,403,285	162,09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92,463	77,774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15,182	3,455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193,118	5,79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2,156,349	64,690
지하수특별회계	346,173	10,38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39,91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